

서울특별시 물재생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제안년월일 : 2023년 4월 19일

제안자 : 도시안전건설위원장

의안 번호	관련 598
----------	-----------

1. 수정이유

- 지역주민의 경우 현행 조례 [별표 3] 제1호가목 및 제2호가목이 정한 기본 감면율 40%를 적용받으면서 여기에 추가하여 제1호나목 및 제2호나목의 감면율 규정에 해당 시 중복감면이 가능토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,
지역주민이면서 65세 이상 노인인 경우 체육시설은 최대 90%, 주차장은 최대 96%까지 감면율이 크게 확대되는 효과가 있음을 감안하여,
편익시설에 대한 별도 인력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지역주민 감면율을 개정안의 80%에서 60%로 조정하고자 함.

2. 수정 주요내용

- 가. 안 별표 3 제1호가목 및 제2호의 물재생센터에 설치된 체육시설과 주차시설의 시장이 정하는 지역주민 감면율 “80%”를 “60%”로 함.
(안 별표 3 제1호가목 및 제2호가목)

3. 참고사항 : 생략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물재생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일 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서울특별시 물재생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별표 3 제1호가목 및 제2호가목 중 “지역주민의 감면률은 80%”를 “지역주민의 감면률은 60%”로 한다.

수정안 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수 정 안
<p>[별표 3] 사용료 감면 범위(제5조의2 제3항 관련)</p> <p>1. 체육시설</p> <p>가. 시장이 정하는 <u>지역주민의 감면 율은 40%</u>로 하되 나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추가 적용할 수 있다.</p> <p>나. (생략)</p> <p>2. 주차시설</p> <p>가. 시장이 정하는 <u>지역주민의 감면 율은 40%</u>로 하되 나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추가 적용할 수 있다.</p> <p>나. (생략)</p>	<p>[별표 3] 사용료 감면 범위(제5조의2 제3항 관련)</p> <p>1. 체육시설</p> <p>가. ----- <u>지역주민의 감면 율은 80%</u> ----- ----- -----.</p> <p>나. (현행과 같음)</p> <p>2. 주차시설</p> <p>가. ----- <u>지역주민의 감면 율은 80%</u> ----- ----- -----.</p> <p>나. (현행과 같음)</p>	<p>[별표 3] 사용료 감면 범위(제5조의2 제3항 관련)</p> <p>1. 체육시설</p> <p>가. ----- <u>지역주민의 감면 율은 60%</u> ----- ----- -----.</p> <p>나. (현행과 같음)</p> <p>2. 주차시설</p> <p>가. ----- <u>지역주민의 감면 율은 60%</u> ----- ----- -----.</p> <p>나. (현행과 같음)</p>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물재생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일 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물재생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
한다.

별표 3 제1호가목 및 제2호가목 중 “지역주민의 감면률은 40%”를 “지역주민
의 감면률은 60%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수정안 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[별표 3] 사용료 감면 범위(제5조의2 제3항 관련)</p> <p>1. 체육시설</p> <p>가. 시장이 정하는 <u>지역주민의 감면율은 40%</u>로 하 되 나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추가 적용할 수 있다.</p> <p>나. (생략)</p> <p>2. 주차시설</p> <p>가. 시장이 정하는 <u>지역주민의 감면율은 40%</u>로 하 되 나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추가 적용할 수 있다.</p> <p>나. (생략)</p>	<p>[별표 3] 사용료 감면 범위(제5조의2 제3항 관련)</p> <p>1. 체육시설</p> <p>가. ----- <u>지역주민의 감면율은 60%</u> ----- -----.</p> <p>나. (현행과 같음)</p> <p>2. 주차시설</p> <p>가. ----- <u>지역주민의 감면율은 60%</u> ----- -----.</p> <p>나. (현행과 같음)</p>